

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(미달러)(주식)

2. 변경 사유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(2021.10.21) 반영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3 년 06 월 23 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신탁계약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23조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	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<생략> ④<생략> 1.~2.<생략> <추가> 3.~4.<생략> <추가>	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<생략, 현행과 같음> ④<생략, 현행과 같음> 1.~2.<생략, 현행과 같음> 3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.~5.<생략, 현행과 같음> 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
제25조(판매가격)	제X영업일	X영업일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제X영업일	X영업일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X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제X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①<생략> 1. <u>대차대조표</u>	①<생략, 현행과 같음> 1. <u>재무상태표</u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